

제25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2024. 8. 26.

행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379호로 2024년 8월 12일 김지연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 가. 작은도서관은 거리가 멀어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들이 도서관 시설을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것으로, 독서문화 향유 관점에서 계속해서 확대 및 활성화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임.
- 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을 이용자 수가 감소했다는 등의 사유로 일방적으로 일시에 폐쇄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다. 공립 작은도서관 현황 조항의 신설을 통해 관리주체와 위치를 구민들에게 명확하게 알림으로써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폐쇄 시에는 주민 의견수렴과 의회 동의 과정을 거치도록 함.
- 라. 또한, 작은도서관 진흥법 및 시행령에 따른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개선점을 모색하고 구민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공립 작은도서관 현황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의3)
- 나.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함(안 제16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도서관법」, 「독서문화진흥법」, 「작은도서관 진흥법」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입법예고(2024. 8. 12. ~ 8. 16.): 의견 없음.
- ※ 부서의견(미래교육과)

조례에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명시하면 도서관의 정보 변경 시 즉각적인 반영이 어렵고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행정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하며 작은도서관의 명칭·위치, 존폐 등 주요 변경사항이 필요할 경우 주민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충분히 거쳐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개진함.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현황 조항 및 실태조사 규정 신설을 통해 작은 도서관의 활성화와 운영 개선점을 모색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정의)에서 작은도서관을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공립·사립도서관으로 구분함. 본 조례의 상위법인 「도서관법」(시행.'22.12.8.)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참고하여 반영한 것임.
- 안 제6조제3항(지원)에서 재정지원 절차·방법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함.
- 안 제7조의3(공립 작은도서관 명칭 및 위치)에서 관내 공립 작은도서관 현황표를 별표로 첨부함.
- 안 제16조(실태조사)에서 운영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비를 차등할 수 있음을 규정함.

○ 검토 결과

- 본 조례는 독서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영등포구 작은도서관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19.4.11.)된 바 있으며 현재 우리 구(區)에서 운영 중인 공립 작은도서관은 20개소, 사립 작은도서관은 25개소로 총 45개소¹⁾('24.8.1.기준)임.
- 이번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작은도서관 정의 세분화 ▲공립 작은도서관 위치 현황 추가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로 나눌 수 있음.

- 작은도서관을 설립 및 운영 주체에 따라 공립·사립 작은도서관으로 세부적으로 구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상위법인 「도서관법」이 개정²⁾(전부개정.'21.12.7.)된 것을 참고하여 반영한 것임. 또한, 공립 작은도서관 위치 현황을 별표(영등포문화재단 위탁 작은도서관 2개소는 제외)로 추가하여 정보전달의 편의성과 이용의 활성화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구분	연번	명칭	위치	비고
공립	1	영등포본동 작은도서관	신길로61길 17 영등포본동주민센터 3층	구(區)운영
	2	청소년문화의집 작은도서관	영등포로64길 15 청소년문화의집 1층	
	3	영등포동 작은도서관	국회대로44길 4 자치회관 1층	
	4	여의동 작은도서관	국제금융로 124 여의동주민센터 3층	
	5	당산1동 작은도서관	양산로23길 11 당산1동주민센터 2층	
	6	당산2동 작은도서관	당산로41가길 7 당산2동주민센터 3층	
	7	늘샘드리 작은도서관	도영로7길 10 도림동주민센터 4층	
	8	목화마을 작은도서관	선유로13길 25 에이스하이테크시티2 218호	
	9	양평1동 작은도서관	선유서로34길 10 주민복지회관 4층	
	10	양평2동 작은도서관	선유로 47길 30 양평2동주민센터 4층	
	11	신길1동 작은도서관	영등포로84길 24-5 신길복지관 2층	
	12	신길3동(생각나무) 작은도서관	신길로41라길 13-8 신길3동주민센터 2층	
	13	신길4동(드나드리) 작은도서관	신길로42길 1 신길4동주민센터 2층	
	14	신길5동(꿈터) 작은도서관	도림로 264 신길5동주민센터 3층	
	15	신길6동(책공간) 작은도서관	대방천로 167 신길6동주민센터 2층	
	16	신길7동(마음서랍) 작은도서관	여의대방로43길 10 신길7동주민센터 5층	
	17	대림1동 작은도서관	디지털로 441 자치회관 3층	
	18	대림2동 작은도서관	대림로23길 27 4층	
	19	밤동산 작은도서관	여의대방로61길 18-2	
	20	조롱박 작은도서관	대림로8길 13-1	

1)

- 아울러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2조제1항3)에 근거하여 구청장은 매년 관할 구역의 작은도서관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

구분	연번	명칭	위치
사립	1	입암도서관	도영로 37 도림교회 비전센터 1층
	2	해오름어린이작은도서관	당산로44길3 삼성타운 608호
	3	두껍아두껍아어린이도서관	디지털로 412 2층
	4	조물왕국 어린이도서관	선유로53길 34-14 1층
	5	당성책세상, 우리세상 문고	당산로 16길 25 2층
	6	문래자이문고	당산로 26 문래자이 102동 1층
	7	대림동작은마을문고	디지털로450 27 주님의교회 2층
	8	북마크어린이도서관	선유로 277-9 지하1층
	9	두날개작은도서관	가마산로 333 유현빌딩 3층
	10	요셉나눔재단법인요셉의원	경인로 100길 6 요셉나눔재단법인요셉의원 4층
	11	언니네작은도서관	가마산로 313 바우빌딩 5층
	12	동네작은도서관	당산로 214 당산삼성래미안 4차 상가1동 B1호
	13	쌍용도서관	도영로7길 15 쌍용플래티넘시티 104동 2층
	14	에듀카페맘작은도서관	대방천로 140-1
	15	꿈이 있는 작은도서관	신풍로16길 1 남서울교회 1층
	16	H HOUSE 라이브러리	시흥대로 595 H HOUSE대림뉴스테이 201호
	17	나무야작은도서관	영신로19길 24 2층
	18	홍우 작은도서관	국제금융로 78 홍우빌딩 601호
	19	도란도란 에스티움 작은도서관	신풍로 77 래미안에스티움 110동앞
	20	e편한세상영등포아텔포레작은도서관	신길로 29 e편한세상영등포아텔포레 108동앞
	21	포레나라곰 작은도서관	국회대로 50길 20 포레나영등포센트럴 3층
	22	작은도서관 마인	신길로93 살레시오교육영성센터 1층
	23	꿈나무 작은도서관	도림로39길 9 정원빌딩 2층 202호
	24	조이비즈니스쿨 작은도서관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12 상아빌딩 503호
	25	꿈꾸는 빛샘 작은도서관	대림로34바길 12 2층

- 2) 제4조(도서관의 구분) ① 도서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공립 도서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3. 사립 도서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 3) 제12조(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작은도서관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도서관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도서관위원회에 제출하고, 국가도서관위원회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과를 국가도서관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바, 해당 조항의 신설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참 고 자 료

1 도서관법

제4조(도서관의 구분) ① 도서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공립 도서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3. 사립 도서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2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작은도서관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도서관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도서관위원회에 제출하고, 국가도서관위원회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